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10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여 책무성을 강화 하고, 충북 교육 구성원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충북교육구성원의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- 소셜미디어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-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

○ 소셜미디어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충북교육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

○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2항)

- 소셜미디어 행사를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

※ 행사 경품 제공 기준(별표)

구 분	대 상	선정방법	경품 제공 한도액 (행사 1회당)	개최 횟수
글·사진·동영상 게시	당첨자/참여자	심사/추첨	500만원 이하	연 12회 이하
퀴즈 및 게임	정답자	추첨	500만원 이하	
설문 및 토론	참여자	심사/추첨	500만원 이하	
공모전 등	당첨자/참여자	심사/추첨	1,000만원 이하	연 2회 이하

비고 1. 「행사 1회당 경품 제공 한도액」은 1회의 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경품의 합계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.

○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소셜미디어 교육 및 소셜미디어 기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, 소셜미디어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, 2016년도에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「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

-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 안 제5조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9조에서 소셜미디어 기자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별표에 소셜미디어 행사를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횟수와 경품 한도액을 정하였음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소셜미디어 기자들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행사 참여자 등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
- 다만, 경품 제공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※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

소셜미디어	개설연도	운영 현황	비고
페이스북	2014년	팔로워 13,035명	2019년 8월 기준
유튜브	2015년	구독자 371명, 누적 조회 81,720회	"
네이버 블로그	2007년	블로그 이웃 1,812명	"
다음 블로그	2007년	블로그 친구 70명	"

※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자(학부모 기자단 등) 운영 현황

학부모기자단	충북교육콘텐츠 지원단	홍보대사	계
124명	14명	33명	171명

※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 홍보 예산 집행 현황

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(8월 까지)
486만원	1,384만원	1,100만원	153만원